

전북지역혁신플랫폼

-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- 사업비 관리 및 세부 집행기준

3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

○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

- 전공·비전공·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, 신규 교재 개발,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
- 사업계획과 연계된 원고료, 위탁용역비* 지급 가능
- * 단, 계획에 근거하여 일부분에 한해 위탁용역을 실시하고, 자체 기준과 선정 절차를 거쳐 무분별한 위탁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
- ※ 원고자문, 위탁용역 결과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주관대학 또는 중심 대학에 귀속함

○ 교육·연구 프로그램 운영비

- 강의료, 원고료, 위탁용역비, 교육학술활동비 또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·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, 핵심분야 소과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
- ※ 원고료, 위탁용역비는 상기 개발비와 같이 사용
- 사업계획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및 소과제 운영 시 발생하는 전문가활용비, 국내·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장 사용료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강의료, 원고료, 통·번역료, 속기료 및 구독료 등의 비용 지급 가능
- 사업계획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및 소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(1개월 이내)로 활용하는 보조인력(진행요원)등에 대한 보수 지급 가능
- 혁신인재지원금은 '전라북도 RIS사업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지침' 및 [별표 7]에 의거하여 지급 가능함

< 혁신인재지원금 주요사항 >

- ▶ 실험실습, 현장실습, 인턴십, 공동교육과정 참여비용 및 소과제 참여학생 인건비 등 혁신인재 육성체계 지원을 위해 해당 인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가능
- ▶ 플랫폼별 사업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대상(재학생, 졸업생(졸업후 2년 이내) 및 졸업 유예생 등) 및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음
- ▶ 지급대상, 지급단가, 지급기준, 환수기준 등을 포함한 혁신인재지원금을 관리 규정을 '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'에 명시하여야 함

- 소과제 중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소과제 활동비 지급 가능

< 소과제 활동비 주요사항 >

- ▶ 과제의 성격, 해당 인력의 과제 기여율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소과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에게 소과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, 과제별 1인당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수당지급은 소과제 수행기간으로 한정함
- ▶ 소과제 활동비는 기여율*이 일정 기준(연구책임자 30%, 공동연구원 10%) 이상인 참여인력만 지급이 가능하며, 소과제 종료 후 수행 결과(평가 결과 등)에 따라 차등 지급(균등배분 지급 불가)해야 하고 정기적 지급 등의 급여 성격으로 지급이 불가함
 - * 기여율은 “과제단위” 개념으로 해당 소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별 개인의 기여도를 말하며, 소과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
 - ※ 사업성과, 사업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중복으로 지급 불가
- ▶ 소과제 활동비의 지급대상, 지급범위* 등과 관련하여서는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’에 명시하여야 하며, 당초 소과제 계획서 상 명시된 소과제 활동비 총액에서 증액할 수 없음
 - * 소과제의 하위단위로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, 소과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

※ 정출연, 특정연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이 기존 직원을 활용하여 소과제 중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, 참여인력은 총 연봉 100%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소과제 주관기관에 인건비 일괄 지급이 가능하며, 소과제 계획서 상 “개인단위” 개념의 참여율이 명시되어야 함

- 핵심분야 소과제 및 지역혁신 자율과제 주관기관에 기관지원경비 일괄 지급 가능

※ 기관지원경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, 본 기준에서 정한 항목 이외의 본 사업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(각 소과제 사업비의 3% 범위 내에서 편성)

- 사업과 관련한 연구비는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수립하고, 선정 계획을 마련한 후 지원 가능

※ 연구비 상세항목을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’에 명시해야 하며, 플랫폼조직(총괄운영본부, 대학교육혁신본부, 핵심분야별 사업단)은 자체규정, 선정계획 등에 위배 되지않도록 선정절차(중복성검토 포함) 및 연구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

※ 자체규정, 선정계획 등에 위배되어 선정 및 수행되거나, 본 기준의 범위에 벗어나서 연구비가 부당집행되는 경우, 별도의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지원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

-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(사무용품 구입비, 인쇄비, 수용료 및 사용료, 여비, 홍보비, 회의비 등) 사용 가능

-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(교재개발 저작권, 시작품, 산업재산권, 수익금, 특허료, 기술이전료 등)은 관계 법령 및 과제협약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창출한 기관이 소유로 하되,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

개발한 경우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

< 주요 집행제한 항목 >

- ▶ 내부교직원의 경우 단발적 특강, 기존 교육체계 내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집행
- ▶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
- ▶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,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
- ▶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
- ▶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(직원 워크숍 경비 등)
- ▶ 대학 교육 혁신 및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비
- ▶ 경진대회 등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(상품권, 유가증권 등)
- ▶ 소과제 하위단위 과제의 주관기관에 지급하는 기관지원경비
- ▶ 교육·연구 프로그램과 무관한 단순 자격증 취득지원비용 및 시험 응시료

< 소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논문 발표 또는 특허 출원(등록) 시 사사문구 >

- ▶ (국문) 본 과제(결과물)는 0000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.(2022RIS-005)
 - ▶ (영문)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"Regional Innovation Strategy (RIS)"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(NRF)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(MOE)(2022RIS-005)
- ※ 재단 과제관리번호(2022RIS-005)는 사업 최종 종료까지 변경되지 않으며, 재원의 출처확인을 위하여 사사문구 중 연도 표기만 해당 사업연도에 맞게 작성

5 실험·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

○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·임차·사용 경비

-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(H/W, S/W) 설치·구입·임차·유지·보수 비용
-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, S/W, 부품, 소모품, 라이선스 등

○ 기자재 구입 관련

- 지역 내 기존 장비·기자재와 중복 되지 않도록 하고,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
- 사업계획서 상에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 구입 시 총괄운영 본부의 승인 후 구입
-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·기자재(교육용 장비 포함)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운영본부에서 장비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

실험·실습 및 기자재 구입·운영비

- 시설장비·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
 -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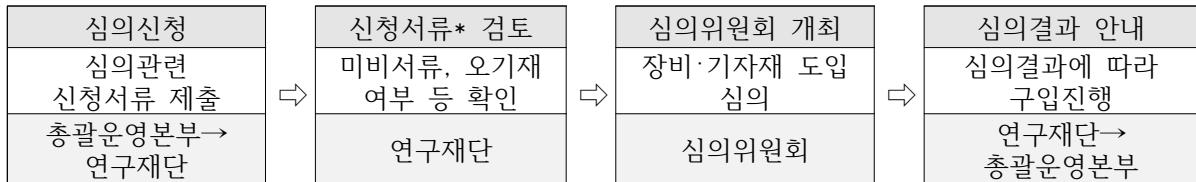
구분	심의대상(구입단가 기준)	심의기관	신청방법
1	3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한국연구재단	본부 및 사업단 → 총괄운영본부 → 한국연구재단
2	1억원 이상	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	본부 및 사업단 →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
- 본사업비(국비+지방비)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·기자재에 적용
- 소프트웨어는 장비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(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)

<3천만 원 이상 ~ 1억 원 미만 장비 : 총괄운영본부 ⇒ 연구재단>

- 심의시기: 홀수달 심의신청·접수,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가능

■ 심의절차



* (신청서류) 시설장비심의요청서, 사업계획서(장비·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), 견적서, 비교견적서, 중복성검토확인서(<https://red.zeus.go.kr>에서 발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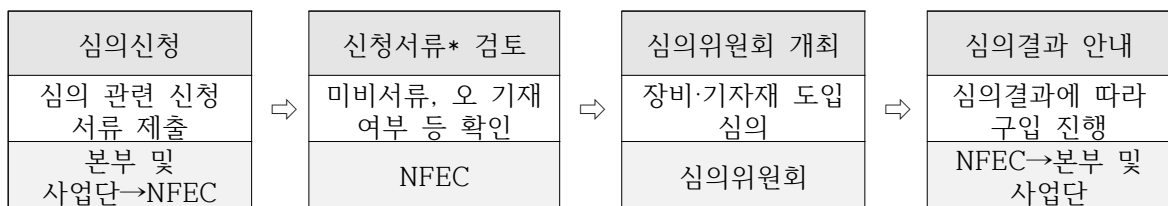
<1억 원 이상 장비 : 본부 및 사업단 ->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>

- 심의 시기 : 매월 2회(2일)개최

※ 심의신청 건수가 적은 1월, 12월 및 본심의* 기간(5월, 6월)을 제외하고 월 2회 개최하여 총 20회로 유지

* 예산편성단계에 진행되며,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1억 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당해연도 본심을 거치는 것이 원칙

○ 심의절차



* (신청서류) 심의요청서, 상시심의 사유 증빙자료, 비교견적서(2개이상), 시설장비가 명시된 사업(연구) 계획서, 중복성검토확인서,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(총사업비 500억원 이상), 수요조사서 등

○ 기자재 등록 관련

-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)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*하여 관리

* 연구장비 명칭(한글, 영문) 및 모델명, 연구장비 제작사, 제작국가 및 공급사, 연구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,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

○ 기자재 관리 관련

- 기자재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관리주체인 주관대학 또는 중심대학에 있으나, 중심대학과 참여대학(기관)간의 협약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상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유권이나 자산관리 부분에 대한 양 기관의 합의 하에 협약서 상에 명시하여 진행하는 경우, 참여대학(기관)에서 소유권 및 자산관리 가능
 - ※ 기 구매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 협약 등을 통해 소유권 및 자산관리 역할 조정 가능
-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소유권 보유 또는 자산관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되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
 - ※ 소유권 또는 자산관리 기관이 참여기관인 경우, 총괄 또는 중심대학에서는 분기별로 자산관리대장 및 개별 기자재에 대한 별도 관리 실시

< 기자재 관리번호/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>

-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,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.
-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플랫폼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.

관리번호: □□□□□□

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.

- 기자재가 「물품관리법」에 따른 국가 물품인 경우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 무상대부 등이 가능
-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'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'에 따라 관리·운영

< 주요 집행제한 항목 >

- ▶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·기자재 구입
- ▶ 3천만원 이상 장비·기자재의 경우, 재단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장비·기자재 구입

6 기업 지원·협력 활동비

○ 지역혁신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력지원비

- 소과제 중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, 재직자 교육 등 기업지원 및 협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

< 주요 집행제한 항목 >

- ▶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
- ▶ 사업 미참여기관, 지역 외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
- ▶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 일방적인 자금 지원
- ▶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(홍보물, 상품권, 기념품 등)

7

성과 활용·확산 지원비

○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활용비 및 기술이전·사업화 비용

- 사업관련 세미나, 포럼, 워크숍 개최 관련 비용 등 성과 공유·확산 비용
- 성과 홍보를 위한 협의회 운영 경비
- 기술·지식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검증 비용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비,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
- 시험·분석·검사, 임상시험, 기술정보수집, 특허정보조사, 정보DB 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

< 주요 집행제한 항목 >

- ▶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(직원 워크숍 경비 등)
- ▶ 대학 교육 혁신 및 과제 추진 목적과 무관한 행사비, 외유성 출장비 등